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선거·정당·정치자금)

2006. 12.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I. 제 출 배 경 ·································	1
Ⅱ. 작 성 방 향	2
1. 공 직 선 거 법 / 2	
2. 정 당 법 / 4	
3. 정 치 자 금 법 / 5	
Ⅲ. 개 정 의 견 ·································	6
궁직선거법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 6	
2.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 7	
3.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 복장의 제한 완화 / 8	
4. 대통령선거에 전국연설원제도 도입 / 9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활성화

-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개선 / 10
- 2. 대담 · 토론회 불참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 / 11
- 3. 인터넷언론사의 토론회 등 중계방송 허용 / 11

정책중심 선거풍토 조성

- 1.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규정 신설 / 13
- 2. 후보자 정책공약집 작성 · 배부 / 14
- 3. 정책공약 비교평가의 공정성 확보 / 16

당내경선의 자유와 지원 확대

- 1. 당내경선의 경선운동 방법 확대 / 17
- 2. 당내경선 위탁시 국고부담 확대 / 17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

- 1.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 18
- 2.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 19

투표참여 확대

- 1. 해외체류자 부재자투표 실시 / 22
- 2.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도입 / 24

절 차 사 무 개 선

- 1.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출 의무화 / 26
- 2. 재 · 보궐선거 부재자투표의 공정성 강화 / 26
- 3. 기타 제도개선 / 27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1. 50배 과태료 부과제 개선 / 29
- 2. 소수정예 선거부정감시단 상시운영 / 30
- 3. 기탁금 및 보전비용 환수의 형평성 확보 / 31
- 4. 통신자료요구 승인권자 조정 / 31
- 5. 자수자의 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 32

정 당 법

당내민주주의 보호·육성

- 1.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 당대표경선 위탁 / 33
- 2. 공천관련 금품 등 수수행위 처벌 신설 / 33
- 3. 종이당원 · 당비 임의인출 등 탈법행위 개선방안 마련 / 34

정당활동 보호 실효성 확보

- 1. 정당법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신설 / 35
- 2. 정당법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 35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조성방법 확대

- 1.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후원회 허용 / 36
- 2. 정당국고보조금 증액 / 37
- 3.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 37
- 4. 정치자금 지정 납세제도(Check Off) 도입 / 38

정치자금사무 합리화

- 1. 후원금 기부내역보고 폐지 / 39
- 2. 정치자금영수증 및 당비영수증 발급제도 개선 / 39
- 3. 후원금 고액기부자 공개기준 상향조정 / 40
- 4. 정치자금법 위반 자수자 특례규정 신설 / 40

<참 고 자 료> : 41

I. 제 출 배 경

- 1994. 3.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으로 종전까지의 포괄적 제한・금지 체제를 개별적 제한・금지 체제로 전환한 이후 18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나, 성숙된 국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2004. 4. 15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2006. 5. 31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거·정치제도 전반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우리위원회는 시대정신과 정치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 선거·정치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민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민주주의 정치 역량을 강화하며, 선진 정치문화 창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것임.

Ⅱ. 작성방향

1. 공직선거법

첫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범위를 확대하여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선거운동이 허용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복장의 제한을 완화하고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연설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

둘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초청대상 후보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분리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불참자에게는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비용의 보전을 제한하는 한편,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함.

셋째,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정책공약의 구체적 목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정책의 우선순위등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선거인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함.

넷째, 당내경선의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투·개표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당내경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다섯째, 방송·신문 등 미디어의 융합 추세를 고려하여 언론매체의 선거보도 공정성 확보와 정당·후보자의 권리구제 상시 보장 등을 위하여 현행 보도매체별로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 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모든 언론매체의 선거보도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통합 심의기구로서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함.

여섯째,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관원·상사원·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외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고, 투표참여확대를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를면제 또는 할인하는 등 투표참여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일곱째, 후보자 관련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재자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전

벽보·선거공보·정책공약집 등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물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적용 배제규정을 신설함.

여덟째,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하고,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수정예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통신관련 선거범죄를조사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영장전담판사 또는 당직판사의 승인을얻도록 조정하는 한편, 선거범죄 근절을 위하여 정당간부 및 선거운동관계자가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2. 정 당 법

첫째, 당내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은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와 종이당원·당비인출 등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둘째, 정당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활동방해죄, 당대표경선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워명부 강제열람죄 등 정당법 주요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정당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규정을 신설함.

3. 정치자금법

첫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국고보조금 예산 계상단가를 선거권자수 기준 1,000원으로 인상하며, 법인·단체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치자금 지정 납세제도(Check Off)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액 중 1만원까지는 정치자금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은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정당에지급하도록 함.

둘째, 정치자금 사무의 합리화를 위하여 후원금 기부내역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제도를 개선하며, 후원금 고액 기부자 공개기준을 현행 연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선거범죄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함.

Ⅲ. 개 정 의 견

공직선 거 법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 가. 선거운동 주체의 확대 (§60의3①·②)

현행은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만이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인적범위를 확대하여 예비후보자의 가족·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도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선거운동방법 확대 (§60의3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후 우려하였던 선거과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예비후보자와 그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을 확대 허용하고자 함.

2.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가.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 상시 선거운동 허용 (§59)

정당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속당원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유권자의 인터넷홈페이지 선거운동 상시 허용 (§59)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유권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선거에 관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다. 인터넷언론사 실명인증제 보완 (§82의6①)

인터넷언론사가 홈페이지의 대화방·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인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방법 외에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3.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 복장의 제한 완화

가. 선거사무관계자 어깨띠 착용 허용 (§68①)

후보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연설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현행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5인 이내의 선거사무관계자만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나. 선거사무관계자 동일복장 착용 허용 (§105②)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연설원·회계책임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단가의 범위 안에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현행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운동관계자에 한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위반시 처벌이 곤란하므로 비현실적인 제한을 폐지함.

4. 대통령선거에 전국연설원제도 도입 (§79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인 이내의 전국연설원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연설원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활성화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 토론회 개선

가. 토론회 개최방법 개선 (§82의2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초청 대상 후보자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의 순위에 따라 앞 순위부터 3인의 후보자와다른 후보자를 분리하여 개최하도록 함. 다만, 초청대상 후보자수가 4인인 경우에는 4인의 후보자를 함께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제안이유

• 현행규정에 따라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토론진행이 불가능하여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후보자간 정견· 정책의 비교평가가 곤란하므로 유력후보자와 군소후보자를 분리하여 토론 회를 개최하고자 함.

나. 토론회 중계방송시간 법정 (§82의2⑩)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공영방송사가 시청율이 높은 시간대(오후 8시 에서 오후 11시 사이)에 중계방송하도록 의무화함.

- 2. 대담·토론회 불참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 (§135의2② 신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소요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 제16대 대선의 주요정당 후보자는 방송광고비용으로 약 14억원, 방송연설 비용으로 약 72억원 정도를 지출함.

제안이유

- 현행「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4항에서 후보자의 대담·토론회 참석을 의무화하고 있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의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법익형량하여 볼 때 유권자의 알권리가 결코가 법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고자 함.
- 3. 인터넷언론사의 토론회 등 중계방송 허용 (§71, §82의2·§82의3) 인터넷언론사도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및 각급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현행「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다른 언론사가 개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와 후보자 방송 연설 등의 중계방송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여 후보자 관련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책중심 선거풍토 조성

1.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규정 신설 (§10의2 신설, 현행 §10의2· §10의3은 각각 §10의3·§10의4로 변경)

가. 단체의 정책공약 비교ㆍ평가 공정의무 신설

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여 공표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함.

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제공 등 협조의무 신설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로부터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협조하도록 함.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선거 촉진ㆍ지원 의무 신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는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정책선거 촉진을 위하여 인쇄물· 시설물·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정책선거 촉진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함.

2. 후보자 정책공약집 작성·배부 (§66 신설)

가. 정책공약집 작성방법

-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의 정책공약집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작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도록 함.
- 정책공약집에는 공약의 구체적 목표, 재원 조달방안, 정책 이행 방안, 정책 달성기한,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이행 평가계획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다른 정당 또는 다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일체 게재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정책공약집의 1면에 한하여 당해 후보자의 사진·기호·성명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 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책공약집 배부방법

정책공약집은 후보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연설원·회계책임자가 배부할 수 있되, 호별방문 또는 가두살포에 의하거나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도록함. 후보자 등이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배부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함)를 제출하도록함.

다. 정책공약집의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정책공약집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치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은 당선인 결정 후 임기만료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대 안 : 현행 책자형선거공보를 정책공약집으로 대체

▶대통령선거에서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와 별도로 후보자 정책공약집 작성· 배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후보자별 약 25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를 정책공약집으로 대체함.

제안이유

• 현행 선거공보에는 구체적인 정책공약보다 추상적인 정치구호 등을 게재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유권자의 관심이 저조하므로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공약집 작성·배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3. 정책공약 비교평가의 공정성 확보 (§108의2 신설)

가. 정책공약 비교평가 공표방법 등 제한

언론기관·단체 등이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 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평가결과를 정당 또는 후보자 별로 순위를 부여하여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정책공약 비교평가 자료의 보관

언론기관·단체 등이 후보자의 정책공약집에 게재된 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당해 언론기관·단체 등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관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등을 함께 공개하여야 하고, 평가자료 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도록 함.

당내경선의 자유와 지원 확대

1. 당내경선의 경선운동 방법 확대 (§57의3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선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당내경선 위탁시 국고부담 확대 (§57의4②)

「정치자금법」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도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제안이유

• 현행은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위탁한 경우에만 투표 및 개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정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

1.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8의2 내지 §8의6)

가. 설치목적과 방법

선거보도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각각 보도매체별로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거보도에 대한 통합심의기구로서 선거보도심의위원 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 설치·운영하도록 함.

나. 위원회 구성방법 및 위원의 임기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방송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대한 변호사협회·인터넷언론단체·여론조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 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공직선거법상 각종 심의기구 구성·운영 현황 : 참고자료 1

다. 위원장 호선과 분과위원회 운영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위임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안이유

• 방송·신문 등 모든 언론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보도를 게재하고 있어 동일한 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중복된심의를 받게 되는 바, 이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과 심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가. 선거보도의 공정여부 심의 및 조치 (§8의2 내지 §8의6)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언제든지 직권에 의해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를 행한 방송사·언론사·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불공정 선거보도 피해자의 이의신청 심의 및 조치 (§8의2 내지 §8의6)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방송사·정기간행물·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 내용이 불공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비방·왜곡선전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 심의 및 조치 (§8의2 내지 §8의6)

방송·정기간행물·인터넷언론에 공표된 비방 또는 정책공약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보도심의 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공표·보도목적의 여론조사 심의 (§108)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로부터 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 추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기재한 여론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하고, 심의결과 여론조사계획이 객관성을 결여하였거나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제안이유

- 선거시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탈법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아니하였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의 공표로 인하여 유권자의 의사 형성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 만으로는 법익침해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유사한 입법례로서「공직선거법」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에서 방송·신문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광고가 위법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272 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에게 중대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방조치권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의 입법례로서 프랑스의 경우 1977년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프랑스 여론조사 심의 입법례 : 참고자료 2

투 표 참 여 확 대

1. 해외체류자 부재자투표 실시 (제14장의2 신설)

가. 국외부재자투표 대상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관원·상사원·유학생·여행자 등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중 외국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여행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이하 "국외부재자투표 대상자"라 함)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5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 현재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다. 국외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공관의 장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송부하되, 투표용지의 작성·발 송·회송 과정에 정당의 참관을 보장하도록 함.

라. 국외부재자 투표방법

국외부재자 투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재외공관이 설치된 지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소를 둔 국외부재자는 재외공관의 장이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국내 부재자투표소의투표절차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고, 국외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거소를 둔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거소에서투표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외부재자투표의 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투표를 접수하여 투표함에 투입·보관한 후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서 개표하도록 함.

제안이유

• 최근 외국 파견근무자 및 유학생의 증가와 해외여행의 일상화에 따라 해외체류 국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부재자투표 실시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치권력의 대표성과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선거의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범위안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도입하고자 함.

※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 참고자료 3

2.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도입 (§6)

가. 투표참여 교통편의 제공 및 국·공립시설 이용료 면제·할인 투표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립공원·박물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하는 등 투표참여자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제안이유

- 최근 낮은 투표율로 인한 선출직의 정통성과 대표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홍보활동만으로는 투표율 제고에 한계가 있음.
- 투표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자 함.
 - ※ 최근 재·보궐선거 최저투표율 현황
 - 1. 국회의원선거 : 18.1% (송파갑, 2006. 7. 26. 실시)
 - 2. 기초단체장선거 : 12.6% (부산수영구, 2000. 6. 8. 실시)
 - 3. 광역의원선거 : 9.0% (부산수영구 제1선거구, 2000, 10, 26, 실시)
 - 4. 기초의원선거 : 8.8% (용인시 수지읍, 2000. 6. 8. 실시)
 - ※ 역대 주요선거 투표율 : 참고자료 4

나. 투표참여자 우대행위의 의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에게 투표참여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립공원·박물관·공영주 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는 금전·물품·거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함.

제안이유

• 현행「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1호에서는 행위주체를 막론하고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전·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투표참여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위법성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절 차 사 무 개 선

1.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출 의무화 (§65)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일부만을 제출하는 경우 포함)에는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자신의 재산상황·병역사항·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및 직업·학력·경력 등인적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자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시 첨부한 서류를 1책으로 인쇄하고 다른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동봉하여 매세대에 우송하도록 함.

제안이유

- 선거공보에 재산·병역사항·납세실적·범죄경력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 2006. 5. 31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11,644명의 후보자 중2.8%에 해당하는 322명이 선거공보 미제출

2. 재·보궐선거 부재자투표의 공정성 강화 (§201⑥)

가. 부재자 투표소 설치 • 운영

현행 재·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부재자투표 방식은 거소투표의 예에 의하고 있어 대리투표 등 투표부정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나.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

재·보궐선거등에 있어서 거소투표대상자와 주민등록지인 구· 시·군 밖에 거소를 둔 부재자신고인에 한하여 현행과 같이 거소 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신고인은 부재자투표기간 중 구·시 ·군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함.

3. 기타 제도개선

가. 선거홍보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배제규정 신설 (§279 신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폐지된 법률을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홍보물·사진 기타 선전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선거 관리위원회가 공익 목적으로 출판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정당·후보자가 작성·제출하는 선전벽보·선거공보·정책공약집 등 선거 관련 홍보물에 대하여「저작권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공약 이행상황 평가 등 공익 목적으로 선거 관련 홍보물을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홍보물 백상지 사용 의무화 (§65·§66)

선거공보·정책공약집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비용을 보전하는 인쇄 홍보물은 제작시 백상지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여 제작한 홍보 물은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함.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1. 50배 과태료 부과제 개선

가. 부과대상자 자수시 특례적용 및 포상금 지급 (§261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공받은 금전·물품·서적이나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 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수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과태료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금품 등을 수령한 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기부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선거범죄신고자에 준하여 신원을 보호하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과태료 원인제공자 보전 제한 (§135의2④ 신설)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받은 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0배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경우 당해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시 50배 과태료 처분의 원인이 된 기부행위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소수정예 선거부정감시단 상시운영 (§10의2)

선거부정감시단의 한시적 운영에 따른 전문성 결여와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경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말함. 이하 같음)을 상시 운영하도록하고,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10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20인 이내의선거부정감시단을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하되 선거부정감시단구성에 정당추천제도를 폐지하도록함.

제안이유

- 선거부정감시단의 한시적 운영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선거부정감시단 정당 추천제도에 기인한 편파단속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소수정예화된 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에 정당의 추천을 배제하여 활동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 선거부정감시단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추계 : 참고자료 5

3. 기탁금 및 보전비용 환수의 형평성 확보 (§265의2)

낙선자도 당선자의 경우와 같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사 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반환한 기탁금과 지급한 보전비용을 환수하도록 함.

4. 통신자료요구 승인권자 조정 (§272의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경우「통신비밀보호법」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영장전담판사(영장전담 판사가 없는 경우 당직판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제안이유

• 통신자료 요구 승인권자를 현행과 같이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로 유지할 경우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긴급한 사안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어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기할 우려가 있고, 지방법원과 원거리에 소재하는 구·시·군위원회의 경우 장거리 왕복에 따른 시간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5. 자수자의 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262)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간부가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정 당 법

당내민주주의 보호·육성

- 1.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 당대표경선 위탁 (제7장의2 보칙 신설) 「정치자금법」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대표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 공천관련 금품 등 수수행위 처벌 신설 (§52의2 신설)

누구든지 특정인을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제안이유

• 공천관련 금품을 받은 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닌 경우 「정치자금 법」으로 벌할 수 없고, 선거구민이 아닌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공천헌금을 수수한 경우 당내민주주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함.

3. 종이당원 · 당비 임의인출 등 탈법행위 개선방안 마련

가. 명의를 도용하여 입당시킨 자의 처벌 신설 (§5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몰래 빌리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입당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나. 당비 임의 인출자에 대한 처벌 신설 (§55의2 신설)

당원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원의 예금계좌에서 당비를 임의로 인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정당활동 보호 실효성 확보

1. 정당법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신설 (제7장의2 보칙 신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의 위원·직원에게「정당법」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내지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및 제61조(창당방해등의 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제272조의2(선거범죄의조사등)의 규정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여 정당활동을 보호하고당내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

2. 정당법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제7장의2 보칙 신설)

「정당법」제8장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진정·고소·고발 등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조성방법 확대

1.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후원회 허용 (§6)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포함)는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 (당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함)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가 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모금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현행「정치자금법」상 대통령선거에서는 당내경선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무소속후보자는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하고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정당국고보조금 증액 (§25)

정당국고보조금 예산 계상단가를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봄)마다선거권자 총수에 예산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제안이유

• 정당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1994. 3. 16. 6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12년간 변경이 없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22①·§31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연간 5억원 또는 전사업연도말 자본총계(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 액을 말함)의 100분의 2중 다액 이내의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함.
 - ▶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 ▶ 언론기관·언론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 ▶ 3사업년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
- 법인·단체가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내부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 기관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
- 법인·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탁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한 법인·단체의 명칭과 기탁금액을 공개하도록 하며, 기탁된 정치자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
- 4. 정치자금 지정 납세제도(Check Off) 도입 (제5장의2 신설) 국세납세자가 자신의 납세액 중 1만원까지를 정치자금으로 지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은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지급방법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

정치자금사무 합리화

1. 후원금 기부내역보고 폐지 (§10③·§40①)

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연간 2회의 정기회계보고를 하고 있으므로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한 때마다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수시보고 의무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2. 정치자금영수증 및 당비영수증 발급제도 개선 (§5②, §17④・⑤) 현행은 후원금 및 당비를 기부・납부한 모든 자에게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정치자금영수증 및 당비영수증을 발급・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액(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기부 또는 납부한 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의 발급・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영수증 및 당비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후원금 기부와 당비납부가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을 위하여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영수증 발급제도를 개선함.

3. 후원금 고액기부자 공개기준 상향조정 (§42④)

현행은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기준을 연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정치자금 모금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

제안이유

• 적법한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기부한 자도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언론에 신원이 공개되므로 불이익을 우려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기피하는 등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기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4. 정치자금법 위반 자수자 특례규정 신설 (§51의2 신설)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선거범죄신고자에 준하여 자수자를 보호하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참 고 자 료

- 1. 공직선거법상 각종 심의기구 구성 · 운영 현황 / 42
- 2. 프랑스 여론조사 심의 입법례 / 43
- 3.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 45
- 4. 역대 주요선거 투표율 / 46
- 5. 선거부정감시단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추계 / 47

1. 공직선거법상 각종 심의기구 구성・운영 현황

구 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8의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8의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8의5)	
설치주체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목적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기사 공정성	인터넷 선거보도 공정성	
설치기한	선거일전 120일이전 ~ 선거일후 30일까지	좌 동	상설기관	
위원정수	9인 이내	9인 이내	11인 이내	
추천기관	시민단체, 대한변협 교섭단체,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방송사	시민단체, 대한변협 교섭단체, 언론학계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교섭단체, 학 계 인터넷언론단체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자격제한	위원 정당가입 금지	좌 동	당원 위촉금지	
임기	150일 이상	좌 동	3년 (연임가능)	
심의대상	○직 권 조 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심의요구 ○반론보도	좌 동	○직 권 조 사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	
권 한	불공정보도에 제재조치 정하여 방송위에 통보	불공정기사에 사과문·정정 보도문 결정, 언론중재위에 통보	이의신청 심의, 불공정보도에 정정보도 등 조치	
외부기관 협조요구	없 음	없 음	기관·단체에 의견·자료제출 협조요청	
도입시기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2. 프랑스 여론조사 심의 입법례

1 개 요

-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 ※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1977. 7. 19 제정)
-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조사 공표의 객관성 보장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일전 2일부터 선거일까지 공표 제한

[2] 주 요 내 용

개 여론조사위원회의 임무·구성·권한

- 임 무
 - 여론조사 공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5①)
 - 공표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제3자의 여론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감시(§5④)
- 구 성
 - 국사원 위원, 파기원(Cour de Cassation)판사, 감사원 위원 각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국무회의에서 발한 법령에 따라 임기는 3년
 - 위원회 결정에 대해 5일 이내에 국사원에 청원 가능

○ 권 한

- 여론조사위원회에 사전 신고와 법령 준수를 약속하지 않는 자는 선거관련 여론조사 실시 제한 (§7)
- 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언론기관 및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자는 여론조사위원회의 수정 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공개(§9①)
- 여론조사위원회는 전국적인 TV·라디오 방송사들로 하여금 수정사항을 방송하도록 할 수 있음(§9②).
- 여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은 공개, 이의신청은 국사원에 제기(§10)

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절차

-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 추출방법과 표본 구성, 조사방법, 전체 설문내용, 각 설문항목에 대한 비응답자의 비율, 조사결과 해석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공 표전에 여론조사위원회에 제출(§3①)
- 여론조사위원회는 여론조사 공표를 한 기관에 조사보고서 전 체 또는 일부를 발표하도록 명령 가능(§3②)
- 누구든지 여론조사위원회에서 여론조사보고서를 열람 가능(§3③)
- 여론조사기관은 표본추출에 대한 정보, 설문지등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2월까지 보관

3.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2005. 1월 현재)

資格別			S 10 10 1	滯		
地域別		市民權者	永住權者	一般	留學生	總計
亞洲地	2 域	2,471,580	554,787	473,621	90,423	3,590,411
日	本	^① 284,840	^① 284,840 515,570 82,666		18,208	901,284
中	國	2,153,198 ②(1,923,800)	2,466	253,212	30,519	2,439,395
其	他	33,542	36,751	137,743	41,696	249,732
美洲地	2 域	776,559	1,132,569	376,135	107,565	2,392,828
美	國	679,212	986,240	335,756	86,288	2,087,496
캐 나	다	86,084	72,077	19,271	20,738	198,170
中南	美	11,263	74,252	21,108	539	107,162
歐洲地	2 域	534,522	20,153	45,309	40,292	640,276
獨立國家	※聯合	523,729	258	6,459	2,251	532,697
Ĥ	럽	10,793	19,895	38,850	38,041	107,579
中東地	2 域	39	169	6,559	156	6,923
아프리카	地域	73	532	6,604	691	7,900
總	計	3,782,773	1,708,210	908,228	239,127	6,638,338

①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1952~2004년, 조선족 포함): 일본 법무성 통계

② 2000년도 중국 전국인구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4. 역대 주요선거 투표율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대별	선 거 일	투표율 (%)	대별	선 거 일	투표율 (%)	구분	선 거 일	투표율 (%)	
1	'48. 7.20(화)	간접선거	1	'48. 5.10(월)	95.5		'52. 4.24(금)	80.2	
	150 0 5(-1)	00.1		150 500(2 1)	01.0	시	'56. 8. 8(수)	79.5	
2	'52. 8. 5(화)	88.1	2	'50. 5.30(화)	91.9	(^) -읍·면	'60.12.19(월)	62.6	
3	'56. 5.15(화)	94.4	3	'54. 5.20(목)	91.1	의 회	'52. 4.24(금) '56. 8. 8(수)	88.4 자료없음	
	'60. 3.15(화)	97.0	4	'58. 5. 2(금)	87.8	의원 선 거	'60.12.19(월)	77.5	
4						면면	'52. 4.24(금) '56. 8. 8(수)	93.1 자료없음	
	'60. 8.12(금)	간접선거	5	'60. 7.29(금)	84.3		'60.12.19(월)	83.7	
5	'63.10.15(화)	85.0	6	'63.11.26(화)	72.1	시시	'56. 8. 8(수)	86.7	
						유.자	'60.12.26(월)	54.6	
6	'67. 5. 3(수)	83.6	7	'67. 6. 8(목)	76.1	서 거 급	'60.12.26(월)	72.7	
7	'71. 4.27(화)	79.8	8	'71. 5.25(화)	73.2	년 / 면 시·도 및	'60.12.26(월) '95. 6.27(화)	81.5 68.4	
8	'72.12.23(토)	 간접선거	9	'73. 2.27(화)	71.4	기·도 및 구·시·군의	'98. 6. 4(목)	52.7	
0	(2.12.23(生)	七省七 年	9	13. 4.41(年)	11.4	장 선 거	'02. 6.13(목)	48.9	
9	'78. 7. 6(목)	<i>"</i>	10	'78.12.12(화)	77.1	0 L 1	'06. 5.31(수)	51.6	
10	'79.12. 6(목)	"	11	'81. 3.25(수)	77.7		'52. 5.10(토) '56. 8.13(월)	81.2 85.8	
11	'00 0.07(人)		10	'0도 0.10/ᅱ)	04.6	시·도의회	'60.12.20(월)	67.4	
11	'80. 8.27(수)	"	12	'85. 2.12(화)	84.6	ハエイメ	'91. 6.20(목) '95. 6.27(화)	58.9 68.4	
12	'81. 2.25(수)	<i>"</i>	13	'88. 4.26(화)	75.8	의원선거	'98. 6. 4(목)	52.3	
10	20万1010(み)	00.0	4.4	200 004(=1)	71.0		'02. 6.13(목)	48.8	
13	'87.12.16(个)	89.2	14	'92. 3.24(화)	71.9		'06. 5.31(수)	51.6	
14	'92.12.18(금)	81.9	15	'96. 4.11(목)	63.9	_ , _	'91. 3.26(화)	55.0	
15	'97.12.18(목)	80.7	16	'00. 4.13(목)	57.2	구·시·군	'95. 6.27(화)	68.6	
	01.12.10(7)	00.1		00. 4.10(7)	01.4	의회의원 선 거	'98. 6. 4(목)	53.2	
16	'02.12.19(목)	70.8	17	'04. 4.15(목)	60.6	[년 /]	'02. 6.13(목) '06. 5.31(수)	49.2 51.4	

5. 선거부정감시단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추계

□ 현 행 : 약 818억원 정도

○ 운영기간: 150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

○ 운영인원 : 구·시·군위원회당 55명(운영요원 5인 포함)

○ 소요예산(1개 선거기준)

(금액단위: 천원)

위원회수	배정 기준	선 감 단원수	운영기간	수당등	소요예산	비고
248	55	13,640	150	40,000	81,840,000	

□ 개 정 안 : 약 344억원 정도

○ 상시운영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예산 : 약 198억원 정도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위원 회수	배정 기준	선 감 단원수	근무 일수	수당등	소요예산	비고
계	265		1,906			19,822,400	
중 앙	1	10	10	260	40,000	104,000	
시・도	16	10	160	260	40,000	1,664,000	
구·시·군	248	7	1,736	260	40,000	18,054,400	

※ 근무일수는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 선거임박시 선거부정감시단 추가인원 운영예산 : 약 146원 정도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위원 회수	배정 기준	선 감 단원수	근무 일수	수당등	소요예산	비고
7	4	265		5,130			14,569,200	
중	앙	1	10	10	71	40,000	28,400	
시	• 도	16	10	160	71	40,000	454,400	
구•᠈	시·군	248	20	4,960	71	40,000	14,086,400	

[※] 선거임박시 추가인원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운영